

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54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9.

발 의 자 : 박 정 · 김남근 · 이용우
이재정 · 송옥주 · 소병훈
김주영 · 김태선 · 허 영
조계원 · 어기구 · 염태영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위원회의 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음. 현행 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한시적 조직으로 설치되어 그 존속기한이 2026년 2월 14일에 만료될 예정임. 반면, 정부가 수립한 제2차 「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」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고 있어, 위원회와 기획단의 존속기한이 종합계획 시행 기간 중간에 종료되는 문제가 발생함.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「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」의 이행 기간 중에 해산될 경우, 이에 대한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.

이에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

년 연장하여 제2차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).

법률 제 호

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(법률 제 20117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) 제2조 중 “7년간”을 “12년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(법률 제20117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) 제2조(위원회 등의 존속기간)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이 법 시행일부터 <u>7년간</u> 존속한다.	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(법률 제20117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) 제2조(위원회 등의 존속기간) --- ----- ----- -----<u>12년간</u>----- -----.